

## 당직근무규정

제정 2004. 11. 1

개정 2012.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당직이라 함은 직원의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주관부서)** 당직의 주관부서는 교육지원처(이하'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 야간당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 당직을 말한다.

③숙직은 청강학사 개관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부터 익일까지의 청강학사 당직을 말한다.

④야간당직은 학기 중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당직을 말한다.

**제5조(근무시간)** ①공휴일 일직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숙직은 토요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야간당직은 정상근무 종료시간부터 21:30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편성)** ①당직은 직원 또는 조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야간당직은 학사운영 및 업무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부서에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야간당직의 주관부서는 해당부서로 한다.

**제7조(감독책임자)** 당직근무자의 근무지정과 지휘감독은 주관부서장이 행한다.

**제8조(당직명령)** 주관부서장은 당직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명령의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주관부서장에게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면제 및 유예)**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된 자로서 발령일로부터 근무월수가 1월 미만인 자

2. 기타 면제를 필요로 인정한 자

②유예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자

2. 장기출장자

3.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 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주관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 확인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야간당직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사적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할 수 없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업무연락 및 문서처리
2. 청강홀 출입자 관리

②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연락사항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내용일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태의 회복 및 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속히 연락함과 동시에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불순분자나 기타 난동자들이 침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로 급히 연락하고, 중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교직원 비상연락망
3. 구내 전화번호
4. 문서수발부
5. 관할 경찰서(파출소) 및 소방서 비상 연락 전화번호부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및 무단결번자의 조치)** 당직근무 태만자 및 무단 결번자는 대학 직원 인사규정 제35조(징계의 사유)에 의거 처리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명령한 당직근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령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